

〈특별호〉

남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조세 공정성 지각에서 사회비교 정보의 역할*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서 타인과의 비교정보 및 세금제시 단위와 같은 세금 관련 정보의 형태와 양이 조세제도의 공정성 및 적정 세금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의 형태로 성인 315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급여명세서의 세금 단위가 세액으로, 세율로, 또는 세액과 세율로 모두 제시된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택당 되었고, 이들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상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만 보고 난 직후(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이전)와 소득 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보고 난 후(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후) 각각의 경우에 부과된 세금 양의 적정성과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타인과의 비교정보 제시 여부에 따라 세금의 공정성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타인과의 비교가 가능한(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본 이후) 경우에 타인과의 비교정보를 보기 이전보다 조세제도가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의 적정성 및 공정성 지각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제시 단위 간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타인의 세금과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세가 더 공정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지각했는데, 특히 세금을 세액 또는 세율로 하나만 제공한 조건보다 세액과 세율을 모두 제공한 조건에서 타인비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의 형태와 양이 합리적 판단에 미치는 의미와 납세자들이 보다 더 공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납세정보의 형태에 대한 실질적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조세 공정성, 세금 적정도, 사회비교, 세금 제시 단위, 정보의 양, 정보의 형태

*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1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양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tkhur@korea.ac.kr

기획재정부의 공시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¹⁾ 참고)에 따르면, 2013년 세입예산 약 298조 원 중 약 73%에 해당하는 약 216조원이 조세수입 예산일 정도로, 세금은 국가 재원의 원천으로써 국가의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세금을 걷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조세 당국의 존재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0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민의 66%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라고 지각하고 있고, 국민의 55%는 기회가 된다면 탈세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2010. 10. 6.). 이와 유사하게, 박명호와 정재호(2011)의 연구에서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지난 3년간 탈세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의 약 96%가 성실히 납세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위협이 거의 없는 가상의 납세 상황에서는 국민의 약 30%만이 성실히 납세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실제로 탈세행위 자체를 쉽게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예를 들면 적발이나 처벌의 위협이 작은 경우)에는 탈세를 선택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또는 조세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OECD 평균인 25%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 박성배, 홍정화, 김선구, 2007)에서도 현재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

한 형태의 소득세율이 사회적인 공정성을 재고해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과된 세금의 절대적인 액수나 조세 관련 법적·제도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금에 어떤 심리적인 가치를 투영하고 있고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일반 사람들의 조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세금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가치는 공정성²⁾이고(이우택, 1995), 특히,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공정성 지각은 조세순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류윤상, 박광배, 김유진, 1996; 박주철, 이남우, 2007, 2008; 배수진, 심태섭, 2011; 이우택, 1995; Moser, Evans III & Kim, 1995). 예를 들어, 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모두 유의미하게 자신의 소득액을 축소하여 보고하려 하고(박주철, 이남우, 2007, 2008), 세금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탈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류윤상, 박광배, 김유진, 1996; 박주철, 이남우,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세금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재고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조세순응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특히, 사람들의 공정성 지각이 실제 제도나 공정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정보의 획득, 처리, 판단과정에서 외적변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해서,

2)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 equity, fairness, justice 등의 표현이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 단어마다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으로 통칭하여 사용할 것이다.

1) <https://www.digitalbrain.go.kr/>

그 공정성 정보처리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에 투영된 공정성이라는 가치, 그 중에서도 상대적인 공정성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되는 조세정보의 양과 내용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소득세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회적 비교 정보의 제시 여부와 세액 또는 세율과 같은 세금의 제시 단위에 따른 차이 지각이 소득세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사회비교와 조세 공정성

조세분야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공정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수직적 공정성, 수평적 공정성, 교환적 공정성이 그것이다(류운상 등, 1996; 박광배, 2002; 배수진, 심태섭, 2011). 수직적 공정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통해서 이러한 공정성을 재고하고 있다. 수평적 공정성은 본인의 세금과 자신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내는 세금의 양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박광배, 2002; Dean, Keenan & Kenney, 1980). 교환적 공정성은 자신이 납세한 만큼 정부로부터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배수진, 심태섭, 2011). 결국 절대적으로 적정한 세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이러한 공정성 개념들에는 기본적으로 '비교'가 전제되어 있다. 즉, 나보다 소득이 높거나 낮은 사람이 내는 세금의 액수, 나와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 내는 세금의 액수, 국가가 나에게 돌려주는 혜택의 정도 등 현재 조세제도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

는 것이다.

특히, 지난 수 년 간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감세와 증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어왔다(한국일보, 2010. 9. 20, 2011. 12. 3).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제정과 폐지, 2012년도의 세법개정(네 구간이었던 기존의 소득구간 체계에서, 최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섯 번째 구간을 추가) 등은 보다 공정한 조세제도를 고안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소득의 많고 적음을 비교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직적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직적 공정성에 투영된 심리적인 가치 역시 매우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세제도에 대한 수직적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현재 소득세제가 얼마나 수직적 공정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세제 변화가 수직적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형태의 연구였다(예, 박춘래, 김종원, 2003; 이계원, 2001; 이균봉, 임성근, 2009; 장호영, 2010; Ankrom, 1993; Berliant & Strauss, 1985). 그러나 이에 더해 일부 이러한 실태조사 차원을 넘어 사회 비교의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조세공정성 관련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Hite (1997)는 현재 조세제도가 수직적 공정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들려준 집단(실험 집단)과 아무런 설명도 없는 집단(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조세공정성과 조세순응과의 관계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원천징수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수직적 공정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알려진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조세순응이 더 높았다. 또한, 류운상 등(1996)은 공정성이 파괴된 상황이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업체의 수익이 더 많으

나 동일한 세금을 징수하는 상황(수직적 공정성 파괴 상황), 상대 업체와 수익이 같으나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더 많은 상황(수평적 공정성 파괴 상황), 국가의 불법행위단속이 강화된 상황(교환적 공정성 파괴 상황), 그리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통계집단)을 사람들에게 직면하게 했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수직적 공정성이 파괴되었을 때, 자영업자들은 수평적 공정성이 파괴되었을 때, 탈세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수직적 공정성이 조세순응이나 탈세경향과 같은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상황 간의 비교를 통해 실험적으로 증명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수직적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동일한 수직적 공정성 하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나 양에 의해 공정성 지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실제로 조세의 공정성 정도와 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조세순응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세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자체를 초월하여, 수직적 공정성의 핵심인 누진적 세율제도의 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비교정보의 제공여부를 통해 공정성 지각을 조사하였다.

수직적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자신과 소득이 다른 사람들의 세금 액수와 자신의 세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직적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소득이 높거나 낮은 타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자신이 납부하는 세金的 비교를 통한 조세 공정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비교이론(Festinger, 1954; Wood, 1996)에 따르면, 사회비교는 유사비교(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사람

이나 상황과 비교), 상향비교(자신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람이나 상황과 비교), 하향비교(자신보다 더 못한 수준의 사람이나 상황과 비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세공정성 상황에서 유사비교는 수평적 공정성, 상향 또는 하향비교는 수직적 공정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상향 및 하향 비교와 정서경험 간의 관계에 대해 장은영과 한덕웅(2004)은 객관적으로 자신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람이든, 자신보다 더 못한 수준의 사람이든, 그 대상과의 비교결과 자신의 현재 상태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지각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정서(기쁨, 안도)가 더 많이 촉발되며,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부정적 정서(열등, 우울)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현재의 조세제도에 누진세율이 상당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예, 김선구, 박성배, 홍정화, 2006; 박성배 등, 2007)을 고려했을 때, 자신보다 높은 또는 낮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소득세와 자신의 소득세를 비교하게 된다면 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정서가 촉발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공정성 인식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Lively, Steelman & Powell, 2010), 나와 다른 소득을 올리는 타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것은 소득세제의 공정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타인과의 세금 비교 여부가 조세공정성 지각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비교 맥락에서 타인과 비교가 가능한 상황(자신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거나 낮은 소득을 올리는 타인이 납부하는 세금정보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정보를 모두 제공받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자신보다 조세제도를 더 공정하다고 지각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세금 제시 단위와 조세 공정성

McCaffery와 Baron(2003, 2004, 2006)은 사람들이 세금을 세액으로 부과하게 할 때와 세율로 부과하게 할 때의 인식이 다름을 증명하였다. 즉, 연구 참가자들에게 일련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직접 부과해 보도록 하였을 때, 세액으로 부과할 때보다 세율로 부과할 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누진세에 맞는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5,000이거나 \$200,000인 상황에서, 소득 각각에 대해 세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 9.3%와 16.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금을 세율로 부과하게 했을 때는 소득 중 각각 9.2%와 24.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렇듯 단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특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보다는 세율로 부과하게 하였을 때 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현상을 측정단위효과(Metric Effect)라고 한다(McCaffery & Baron, 2006). 이처럼 McCaffery와 Baron(2003, 2004, 2006)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그것의 단위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세금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결과가 조세제도의 공정성 지각과 세금 적정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또한 수동적으로 제공되는 조세 관련 정보를 통해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일반 납세자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세정보의 형태와 양이 조세 공정성과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 확인할 가치가 있다.

또한, 세금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심리적 회계장부이론(Mental Accounting Theory: Thaler, 1985)을 응용한 한 연구(Heath, Chatterjee & France, 1995)는 상품 가격의 증감을 액수로 제시하거나 비율로 제시하거나 또는 둘 다 제시하였을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또는 손실이 되는 상황에 대한 지각과 선호가 달라짐을 밝혀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사람들이 어떠한 틀에서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정보임에도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총체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Heath 등(1995)의 연구 결과에는 액수 또는 비율과 같은 제시단위의 영향뿐만 아니라 액수나 비율 중 한 가지 정보만 제시했는가, 아니면 액수와 비율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제시했는가와 같은 정보량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줄어들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Letzring, Wells & Funder, 2006), 단순히 세액이나 세율의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인식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세액으로, 세율로, 또는 세액과 세율을 함께 제시했을 때, 제시된 단위에 따라 그리고 제시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세금 양의 적정성 및 조세제도의 공정성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금 관련 정보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느냐에 따라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사회적 비교 차원에서 자신과 소득이 다른 타인의 세금과 자신의 세금을 비교하는 것과 비교의 용이성 차원에서 그 제시 단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세금의 적정성 및 조세제도의 공정성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제시되는 정보의 형태(타인 비교 정보/세금 제시 단위)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대상과 관련된 정보량의 차이, 즉, 타인 비교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제공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액 또는 세율 하나의 정보만 제공되었는가, 두 가지 정보가 모두 제공되었는가가 세금 관련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방 법

연구 설계 및 참가자

본 연구는 2(타인 세금 정보: 제공 전 대 제공 후, 집단 내 변인) X 3(세금 제시 단위: 세액 대 세율 대 세액+세율, 집단 간 변인) X 2(본인 소득: 저 대 고, 집단 간 변인) 혼합설계였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급여명세서를 받는 회사원 292명, 공무원 23명으로 총 315명(남성 189명, 여성 126명)이었고, 연령은 평균 41.81세($SD=11.34$)로 그 범위는 21세에서 65세까지였다. 참가자들은 세금 제시 단위가 세액인 조건(120명), 세율인 조건(91명), 또는 세액과 세율이 함께 제시된 조건(104명)에 무선택당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1천200만 원 이하가 9명, 1천200만 원 초과 ~ 4천600만 원 이하 209명, 4천600만 원 초과 ~ 8천800만 원 이하 82명, 그리고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15명이었다. 참가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참가자와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참가자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본인 소득 조건의 분석을 위해서 1천200만 원 이하와 1천200만 원 ~ 4천600만 원 집단은 소득 저 집단($n=218$)으로, 그 이상의 소득 집단은 소득 고 집단($n=97$)으로 변환하여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급여명세서는 세금을 세액으로만 제시하는 형태, 세율로만 제시하는 형태, 세액과 세율을 병기하여 제시하는 형태 등 총 세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각 급여명세서는 세법³⁾에 명시되어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에 의거하여 다섯 개의 소득구간당 하나씩 제작되었다. 즉, 세금 제시 단위에 따

라 세 종류의 급여명세서를 제작하였으며, 각 제시 단위 별로 다섯 개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가 각각 제작되어 총 열 다섯 가지의 급여명세서를 제작하였다. 소득구간 별 대표소득은 각 구간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정하였으며, 실험에서는 이를 월급으로 변환한 값과 이에 대한 세액 또는 세율 값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먼저 본 연구의 설문을 웹사이트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그 후에 조사업체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주소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후에 세 조건(세액, 세율, 또는 세액+세율) 중 한 조건에 무선택당되었다. 이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연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응답하고, 응답한 소득에 따라 자신의 소득구간에만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고, 바로 이어 세금 부과가 얼마나 적절한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 응답하였다.⁴⁾ 그리고 다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상 자신의 소득구간을 포함하여 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차례로 보고, 바로 이어 세금의 적정도와 공정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 때,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만 보았을 때와 모든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묻는 적정도와 공정성에 대한 문항은 1) 각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물어 각 조건에 적합한 응답을 도출하기 위해, 또한 2) 유사한 문항이 반복 제시됨으로 인해 뒤에 제시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오염될 가능성(즉, 요구특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항의 표현을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참가자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제시받은 경우, 적정도를 묻

3) 소득세법 제 1장 제 4절 제 1관 제 55조 제 1항.

4) 단, 본인의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연구참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타인비교 정보 제공 전 상황에서는 해당 급여명세서가 사용되지 않았다.

표 1.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및 연구 적용 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세법 상 세율 ⁵⁾	실험반영소득(월)	실험반영세액	실험반영세율 ⁶⁾
1천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500,000원	33,000원	지급총액에서 7% 공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 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2,420,000원	300,300원	지급총액에서 12% 공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5,580,000원	994,620원	지급총액에서 18% 공제
8천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6,170,000원	4,859,613원	지급총액에서 30% 공제
3억 원 초과	9천10만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0,000,000원	18,709,163원	지급총액에서 37% 공제

는 문항은 ‘위 명세표가 당신의 급여명세표라면, 세금이 부과된 정도가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참가자들은 ‘1: 매우 적다 ~ 4: 적정하다 ~ 7: 매우 많다’의 범위 안에 응답하였다. 공정성을 묻는 문항은 ‘귀하는 현재 조세 제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참가자들은 ‘1: 매우 불공정하다 ~ 7: 매우 공정하다’의 범위 안에서 응답하였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제시받은 경우, 적정도를 묻는 문항은 ‘위의 일련의 급여명세표에서 부과된 세금의 정도가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참가자들은 ‘1: 매우

적다 ~ 4: 적정하다 ~ 7: 매우 많다’의 범위 안에 응답하였다. 공정성을 묻는 문항은 ‘위와 같은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참가자들은 ‘1: 매우 불공정하다 ~ 7: 매우 공정하다’의 범위 안에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본인의 직업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고 설문을 종료하였다.

결 과

세금 정보 유형 및 본인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의 적정성 및 공정성 지각

본 연구에서는 조세가 얼마나 적정한지 또는 공정한지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연구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은 공변량 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여 통제된 후, 타인비교정보와 세금 제시단위 및 본인 소득수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2 X 3 X 2 삼원혼합변량분석을 실시했다(표 2 참조). 먼저, 조세공정성에 대한 각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만을 보았을 때($M=2.71$, $SD=1.17$)보다 모든 소득구간의 급여명세서를 봄

- 5)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별로 기술되어 있는 72만 원, 582만 원, 1천590만 원, 9천10만 원 등의 수치는 세법상 직전 구간에서 최대로 납부하는 세금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천200만 원 초과 4천600만 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는 직전 구간인 1천200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 72만 원과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 6)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세금명세서에 사용된 ‘공제’라는 표현은 ‘소득에서 제한다’는 의미로,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공제총액’, ‘공제항목’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인 회사원이나 공무원들에게는 ‘공제’라는 표현이 낯선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수정작업 없이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2. 세금 정보 유형 및 본인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의 적정성 및 공정성 지각 평균(SD)

타인비교 정보	제공 전 ¹⁾						제공 후 ²⁾							
	단위		세액		세율		세액+세율		세액		세율		세액+세율	
소득수준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참가자(n)	91	29	62	29	65	39	91	29	62	29	65	39	91	29
적정도 ³⁾	5.01 (1.01)	4.93 (1.00)	4.79 (0.94)	5.03 (1.09)	5.40 (0.95)	5.05 (1.10)	4.76 (1.15)	4.79 (1.15)	4.97 (1.25)	4.45 (1.48)	4.94 (1.14)	4.87 (1.24)	4.76 (1.15)	4.79 (1.15)
공정성 ⁴⁾	2.78 (1.12)	2.86 (1.27)	2.87 (1.11)	2.48 (1.15)	2.52 (1.17)	2.67 (1.31)	3.45 (1.27)	3.17 (1.14)	3.69 (1.35)	3.21 (1.59)	3.49 (1.32)	4.00 (1.47)	3.45 (1.27)	3.17 (1.14)

- 주. 1)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중 본인 구간의 급여명세서만 보고 응답
 2)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전 구간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응답
 3) 1: 매우 적다 ~ 4: 적정하다 ~ 7: 매우 많다: 타인비교정보 X 세금제시단위 X 소득수준 간 삼원상호작용효과
 4) 1: 매우 불공정하다 ~ 7: 매우 공정하다: 타인비교정보 주효과(제공 전<제공 후); 타인비교정보 X 세금제시단위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으로써 다른 소득 구간의 사람들과 비교가 가능해 졌을 때($M=3.53, SD=1.35$) 조세가 더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판단하였다, $F(1, 307)=4.560, p=.034, \eta_p^2=.015$. 세액 제시 조건($M=3.09, SD=0.96$), 세율 제시 조건($M=3.14, SD=1.04$), 세액+세율 제시 조건($M=3.13, SD=1.05$)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307)=.347, p=.707, \eta_p^2=.002$. 소득 고 집단($M=3.09, SD=1.15$)과 저 집단($M=3.13, SD=0.95$) 간에도 세금의 공정성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307)=.467, p=.495, \eta_p^2=.002$.

이원상호작용 분석 결과에서는 조세공정성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 제시단위 조건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하였다, $F(2, 307)=4.442, p=.013, \eta_p^2=.028$ (그림 1 참조). 그러나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소득 수준 간, $F(1, 307)=.006, p=.939, \eta_p^2<.001$, 소득수준과 세금 제시 단위 간, $F(2, 307)=2.719, p=.068, \eta_p^2=.017$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삼원상호작용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307)=1.392$

$p=.250, \eta_p^2=.009$.

그림 1에 나타난 조세공정성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 제시단위 간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타인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 받기 전과 제공 받은 후 간 조세제도의 공정성 지각의 차이는 세금의 제시 단위가 세액일 때보다는 세율일 때, 세율일 때보다는 세액과 세율을 모두 함께 제시했을 때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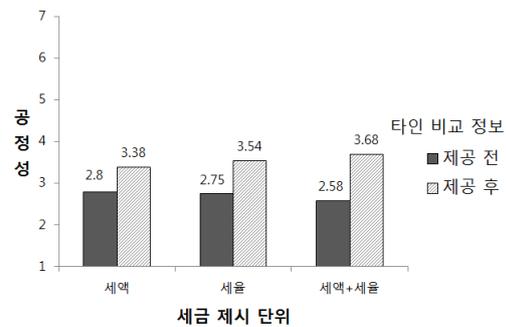


그림 1. 조세 공정성 지각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제시단위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주. 공정성 측정문항의 범위: 1: 매우 불공정하다 ~ 7: 매우 공정하다.

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각 조건 별 단순 주효과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과된 세금 양의 적정성에 대한 각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M=5.05$, $SD=1.01$)와 전 소득 구간에 따른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았을 때($M=4.83$, $SD=1.21$) 간 세금 양의 적정성 지각은 다르지 않았다, $F(1, 307)=.885$, $p=.348$, $\eta_p^2=.003$. 또한, 급여명세서의 세금 제시 단위, 즉, 세액 조건($M=4.88$, $SD=0.92$), 세율 조건($M=4.84$, $SD=0.96$), 세액 및 세율 병기 조건($M=5.09$, $SD=0.93$) 간에도 적정성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2, 307)=1.779$, $p=.171$, $\eta_p^2=.011$,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소득 고 집단($M=4.87$, $SD=1.04$)과 소득 저 집단($M=4.97$, $SD=0.89$) 간 세금 양의 적정성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307)=.904$, $p=.342$, $\eta_p^2=.003$. 이원상호작용 분석 결과에서도, 세금의 적정도에 대한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 제시단위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F(2, 307)=.316$, $p=.722$, $\eta_p^2=.002$,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소득 수준 간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 307)=.506$, $p=.478$, $\eta_p^2=.002$, 세금 제시단위와 소득 수준과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307)=.223$, $p=.800$, $\eta_p^2=.001$.

그러나 세금 양의 적정성 지각에 대한 타인 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 제시단위 및 본인 소득 수준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307)=4.462$, $p=.012$, $\eta_p^2=.028$. 이러한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단순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인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 제시단위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F(2, 92)=1.418$, $p=.247$, $\eta_p^2=.030$, 소득이 낮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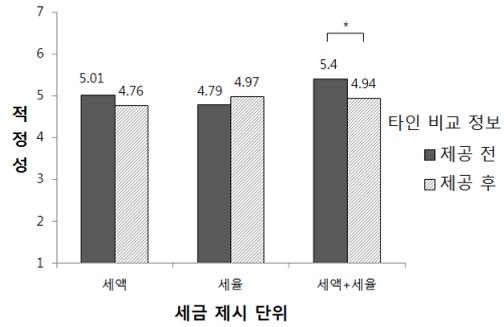


그림 2. 세금 적정성에 대한 타인 비교 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제시단위 간 이원상호작용효과(소득 저 집단)

주. 적정성 측정문항의 범위: 1. 매우 적다 ~ 4. 적정하다 ~ 7. 매우 많다.

* $p<.05$

에서는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 제시 단위 변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2, 213)=4.473$, $p=.013$, $\eta_p^2=.040$ (그림 2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금을 세액 또는 세율 한 개의 단위로 제시했을 때는 비교정보 제공 전 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세액과 세율 단위로 동시에 모두 제시했을 때는 타인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했을 때($M=4.94$, $SD=1.14$)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M=5.40$, $SD=0.95$)보다 더 세금의 양이 적당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62)=4.314$, $p=.042$, $\eta_p^2=.065$.

논 의

본 연구는 타인비교정보 및 세금제시단위와 같은 세금 관련 정보 형태의 변화가 세금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공정하게 지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조세공정성 지각에 대한 타인비교 정보의 제공 여부의 주효

과, 즉, 하나의 급여명세서만 제시한 상황과 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를 모두 제시한 상황 간 조세공정성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타인비교 정보의 제공 여부와 급여명세서의 세금 제시 단위가 상호작용하여 조세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세금의 적정성 지각에서는 본인의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만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와 세금제시단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자신의 소득구간에 맞는 급여명세서 하나만 보고 응답한 경우보다 다섯 개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고 응답한 경우에 세금이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비교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즉, Adams (1965), 장은영과 한덕웅(2004), 및 Lively 등(2010)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공정함을 판단하는데, 이러한 비교는 수평적 비교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 비교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자신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또는 낮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양과 자신의 세금 양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타인과의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조세에 대한 공정성을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타인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했느냐의 여부와 세금의 제시 단위가 어떠했느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조세의 공정성 지각과 적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의 공정성 지각에 있어서 급여명세서의 단위와 타인비교정보 제공 여부 간에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그림 1 참조), 세금 제시 단위를 변화시킨 모든 조건에서 자신의 세금과 타인의 세금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세가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차이는 세금을 세액 또는 세율로 단독 제공한 조건보다 세액과 세율 형태를 동시에 모두 제공한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세금의 적정도 지각에 있어서 타인 비교정보와 세금 제시 단위 및 참가자의 소득 수준 간 삼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단순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본인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타인 비교정보와 세금 제시단위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그림 2 참조). 즉, 참가자 본인의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세금을 세액과 세율 단위로 모두 함께 제공했을 때, 세액 또는 세율 한 가지 단위로만 제공했을 때보다 부과된 세금의 양이 더 적정하다고 지각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결과이기는 하지만, 조세공정성 지각의 상호작용효과와 동시에 고려해보면, 세금을 세액과 세율 형태로 동시에 모두 제공할 때, 즉 세금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했을 때, 조세 공정성 및 적정성 지각에 미치는 타인비교 정보 제공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금에 대한 적정도와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비교 정보제공 여부와 함께 제공 정보의 양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소득구간이 다른 사람들의 급여명세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세제도를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사용되는 형태의 급여명세서에 소득구간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세금에 대한 공정성 지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본인의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 구간의 세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정보의 양 측면에서 해석하면, 대상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정보가 부족한 경우보다 더 자의적인 판

단을 할 개연성이 줄어들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점(Letzring, et al., 2006)을 고려했을 때, 세금과 관련된 정보(다른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의 정도/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단위)를 더 많이 제공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세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조세 제도가 공정성이 상당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박성배 등, 2007)과 종합하여 본다면,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갖는 불만(박명호, 정재호, 2011; 연합뉴스, 2010. 10. 6)의 적어도 일정부분은 세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재의 세금명세서의 형태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세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세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형태로 세금명세서를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공정성 및 적정성 지각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조세순응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세순응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연구들을 보면 세금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세순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주철, 이남우, 2007; 배수진, 심태섭, 2011; 이우택, 1995; Moser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자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예, 다른 사람의 납세정보와 세율정보 등)를 제공하게 되면 지각된 공정성의 수준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조세순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계점

세금의 적정도와 공정성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사회비교 가능 여부와 정보의 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현실적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즉, 본 연구의 설계상 사회비교 가능 여부 조건은 집단 내 변인으로 조작되어 제시된 급여명세서의 형태에 따른 세금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급여명세서의 형태에 부합하는 형태로 적정성 및 공정성 문항의 표현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문항의 표현만을 놓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것을 묻는 문항을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일한 급여명세서 조건 내에서 다른 변인들을 조작하여 적정성 및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변인의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조건과 본인의 소득구간을 포함하여 전 구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조건에 따른 공정성 및 적정성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정성 및 적정성 문항의 표현도 각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켜야 각 조건에 부합하는 응답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각 조건에 따른 문항 표현의 변화는 앞선 문항에 대한 응답이 뒤의 문항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 설계이기 때문에 두 문항의 표현은 서로 달랐지만 앞선 응답이 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타인비교 정보 제공 여부 간 집단 내 설계가 아닌 집단 간 설계를 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처치를 타 소득구간의 조세정보를 제공받기 전과 후로 조작하였지만, 실제 응답자들이 사회비교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는 측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비교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심리적 사고과정에 대한 직접적 검증은 없었기에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참가자의 소득 분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상 두 번째(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와 세 번째 구간(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에 편중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년 소득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년 평균 8,8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을 적절히 표집하지 못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인식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1구간과 4구간 및 5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표집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 다양한 소득구간 별 참가자들 간 인식의 차이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수준을 등간격으로 더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세금 정보를 제공한다면 참가자들이 실제 자신의 소득세와 더 가까운 세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과 다른 소득수준의 사람들과 보다 직접적인 사회비교가 촉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참가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비교의 효과를 더 면밀하게 확인하여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조세 연구를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자가 조세 연구를 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심리학적인 개념이나 특성을 이용하여 조세연구를 한 경우만 일부 존재하고 있기에 본 연구가 갖는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조세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세무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변인인 세무조사 등을 조작하였다면 더 실질적인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연구를 기획한 이유는 추후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응용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었고 기대대로 충분히 적

용 가능한 결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인터넷 조사 형태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즉, 인터넷 자료 수집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로 표본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혼입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조사의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의 분석 단계에서 참가자의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시나리오 조작을 통한 연구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 설문조사의 경우보다는 인구통계학적인 편중의 영향이 다소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인 편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구, 박성배, 홍정화 (2006).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 연구.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 12월 2일, 593-616.
- 류윤상, 박광배, 김유진 (1996). 탈세에 대한 형평성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23-33.
- 박광배 (2002).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명호, 정재호 (2011).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성배, 홍정화, 김선구 (2007). 소득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에 대한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도 연구. 대한회계학회, 12(2), 311-340.

- 박주철, 이남우 (2007). 조세 공정성 지각이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회계학회: 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 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21, 75-91.
- 박주철, 이남우 (2008).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 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9, 123-144.
- 박춘래, 김중원 (200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기간별 공평성 분석. 회계저널, 12(1), 115-152.
- 배수진, 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2(3), 215-273.
- 연합뉴스 (2010. 10. 6). 직장인 66% “나, 세금 많이 낸다”.
- 이계원 (2001).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 18(2), 7-33.
- 이균봉, 임성근 (2009). 소득세의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 분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재무와회계정보저널, 9(1), 49-72.
- 이우택 (1995). 조세행정의 적정절차와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11, 101-102.
-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27-153.
- 장호영 (2010). 세율변화에 따른 공평성분석: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31, 343-357.
- 한국일보 (2010. 9. 20). 부자감세 ‘논란 불씨’ ... 서민들 세부담 증가로 불똥 튄다.
- 한국일보 (2011. 12. 3). 여권 ‘부자 증세론’ 갈등 확산.
- Adams, S. J.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 Ankrom, J. (1993). An analysis of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in Sweden, the U. S. and the U. K..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5(1), 119-124.
- Berliant, C. M. & Strauss, P. R. (1985).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1966-1977. In M. David & T. Smeeding(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s Well-Being* (pp. 179-214).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an, P., Keenan, T., & Kenney, F. (1980). Taxpayers’ attitudes to income tax evasion: An empirical study. *British Tax Review*, 25, 28-44.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Heath B. T., Chatterjee. S., & France. K. R. (1995). Mental accounting and changes in price: The frame dependence of reference depend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90-97.
- Hite A. P. (1997). An investigation of moral suasion and vertical equity arguments on intended taxpayer noncompliance. *Law&Policy*, 19(1), 1-22.
- Letzring. D. T., Wells, M. S., & Funder, C. D. (2006). Information quantity and quality affect the realistic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111-123.
- Lively, J. K., Steelman, C. L., & Powell, B. (2010). Equity, emotion, and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pon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4), 358-379.
- McCaffery, J. E., & Baron, J. (2003). The humpty dumpty blues: Disaggregation bias in the evaluation of tax system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1, 230-242.
- McCaffery, J. E., & Baron, J. (2004). Framing and taxation: Evaluation of tax policies involving household composi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 679-705.
- McCaffery, J. E., & Baron, J. (2006). Thinking about tax.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2(1), 106-135.
- Moser, V. D., Evans III, H. J., & Kim, K. C. (1995).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exchange

-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9(4), 619-634.
- Thaler, R. (1985). Mental accounting and consumer choice. *Marketing Science*, 4(3), 199-214.
- Wood, V. J. (1996). What is social comparison and how should we study 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5), 520-537.
- 1 차원고접수 : 2013. 03. 23.
수정원고접수 : 2013. 08. 26.
최종게재결정 : 2013. 08. 26.

〈Special Section〉

How Much Do Others Pay?: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n Perceived Tax Fairness

Jin an, Lee

Seung-Hyuk, Choi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aimed to exam the effect of quantity and types (such as, social comparison and amount/rate information) of tax-related information on perception of tax fairness and tax adequacy. 315 adults participated an internet survey developed with 2 (social comparison: only own paystub vs. others' paystubs) X 3 (metrics of tax; absolute amount vs. rate vs. both) mixed design. Participants were first presented with a hypothetical paystub within their own income range and then later five hypothetical paystubs that were designed to describe all range of income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Aggregate Income Assessment. The paystubs provide the taxes either in absolute amount, rate, or both. Participants reported twice perceived adequacy and fairness of the present tax both right after the first paystub of their own income range and after the extra five paystub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effect of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That is, the extra five paystubs of all income range, in addition to a paystub of their own income range, made the tax system perceived fairer. Furthermore, there were a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and metrics of tax. That is, the impacts of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 were stronger when the paystubs provided both tax absolute amounts and rat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optimal quantity and quality of tax-related information for rational judgment and social attitudes toward tex system.

Key words : tax fairness, tax adequacy, social comparison, metrics of tax, quantity of information, type of information